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0. 19 선고 2021가단546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곽경화

피고A

피고보조참가인B

변론 종결2021. 8. 24.

판결 선고2021. 10. 19.

주 문

1. 경북 성주군 C 전 443㎡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0. 9.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20. 9. 14. 접수 제123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 사이의 대출계약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5. 20.경 D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E은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 아래 -

보증내용	보증금액	180,000,000원(이후 156,000,000원으로 변경)
보증일자	2015. 5. 20.	
보증기한	2015. 7. 17.(이후 2021. 7. 9.로 변경)	

2)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위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D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소정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 등 모든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손해금율의 변동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손해금율은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4)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D의 대표이사였던 B은 D와 원고가 체결한 위 약정과 관련하여 D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5)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의 발생 가) 원고의 대위변제

D는 2020. 10. 23.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D를 대위하여 2021. 3. 17. E은행에 158,988,523원을 변제하였다.

나) 일부회수와 확정손해금의 발생

원고는 위 약정과 관련하여, 대위변제 후 357,470원을 회수하여 이를 원금에 충당하였고, 위 약정의 대위변제잔금은 158,631,053원(= 대위변제금 158,988,523원 - 회수금 357,470원)이 되었으며, 위 회수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따라 확정손해금 78원이 발생하였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B은 2020. 9. 14. 자녀인 피고와 사이에, 경북 성주군 C 전 4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20. 9. 14. 접수 제123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B의 재산상황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5,183,100원 상당)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한편 당시 B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536,000원이다.

1 G카드	5,000,000원
2 E카드(통합)	1,021,000원
3 E카드(통합)	821,000원
4 E카드(통합)	4,000,000원
5 G카드	567,000원
6 E카드(통합)	8,000,000원
7 E은행 본부총괄	39,000,000원
8 H	8,127,000원
합계	66,536,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I 기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위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D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0. 9. 14.경에는 이미 원고와 D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D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020. 10. 23.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사전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고, 2021. 3. 17.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및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증조부와 조부모의 산소가 있는 토지로서 B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사촌들이 본인들도 위 부동산에 산소를 모시겠다며 B과 실랑이하여 피고가 산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B과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피고는 선의이다.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과 피고는 부자관계로서, D가 2020. 10. 23.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키기 1달가량 이전인 2020. 9. 14. 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권성우